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87호 2022. 8. 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_____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____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_____ 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_____ 5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3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_____ 6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27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8.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8-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2-14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27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23-7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53번길 5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3-2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17번길 6 (마전동, 해당)	20081231	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해당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039 (원당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검단신도시 C8-1-3블럭
5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5-2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2-6 (급곡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6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5-3, 655-6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2-2 (급곡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7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4-2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2-1 (급곡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8-8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길 25-1 (오류동)	건물 말소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40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2. 8. 8. ~ 2022. 8. 22 (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62호4240 등 11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65호4240	쏘렌토	***캐피탈(주)	2022.07.08
2	68더7358	G90	**캐피탈(주)	2022.07.12
3	20더5635	A6 3.0 TDI quattro	이*애	2022.07.15
4	23우4137	G80	홍*희	2022.07.18
5	14루6983	K5	안*현	2022.07.20
6	116고2310	Mercedes-Benz E350 4MATIC	***캐피탈(주)	2022.07.21
7	32누6368	A6 35 TDI	정*현	2022.07.22
8	56고6264	Tiguan 2.0 TDI Blue Motion	김*리	2022.07.22
9	38머6877	BMW 740Li	원*애	2022.07.26
10	384저8460	Mercedes-Benz S450 4MATIC	**캐피탈(주)	2022.07.28
11	전북31너2716	카니발	김*(가미)	2022.07.2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4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구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친화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심의 결과(권고사항) 이행

2. 주요내용

- 아동 4대 권리의 구체적 명시 및 조항 정비(안 제2조)
-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설치 명시(안 제3조)
- 구체적 아동 비차별 요소 명시(안 제3조의2제1호)
-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명시(안 제5조)
- 시민의견수렴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아동영향평가 수당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어린이 참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6조~제18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23조)

-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관련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1조)
- 옴부즈퍼슨 제도 근거 조항 명시(안 제32조~제3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행복과, 전화 560-6822,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친화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심의 결과(권고사항) 이행

2. 주요내용

- 가. 아동 4대 권리의 구체적 명시 및 조항 정비(안 제2조)
- 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설치 명시(안 제3조)
- 다. 구체적 아동 비차별 요소 명시(안 제3조의2제1호)
- 라. 아동 예산 확보 및 분석 명시(안 제5조)
- 마. 시민의견수렴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바. 아동영향평가 수당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사. 어린이 참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6조~제18조)
- 아.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23조)
- 자.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관련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1조)
- 차. 옴부즈퍼슨 제도 근거 조항 명시(안 제32조~제3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으로”를 “지역으로,”로 하며, “보장하는”을 “보장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협,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및 폭력, 차별대우와 착취,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인 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으로 한다.

제5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의2(중전의 제5조)의 제목 “(기본원칙 등)”을 “(조성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5조) 제1호 중 “차별받지 않고”를 “자신 또는 부모, 후견인의 사회적 신분, 연령, 성별, 종교,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제안한 의견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구 아동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알릴 수 있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민의견수렴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자체 일반현황 및 제11조의 아동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해서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아동권리 옹호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당) 구청장은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제13조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중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2.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④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제1687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2.08.08.(월)
아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수집단 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보호자 및 아동대표자
8.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제6장(제29조 및 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제30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4. 아동참여기구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장(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32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태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34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5. 아동보호자 및 아동 대표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옴부즈퍼슨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해촉) 구청장은 음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음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6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를 제3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u>미만의</u> 사람을 말한다.</p> <p>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u>지역으로</u>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u>보장하는</u>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 <u>미만인</u> ----- -----.</p> <p>2. ----- ----- ----- <u>지역으로</u>, ----- ----- <u>보장하며</u>, ----- -----.</p> <p>3. “<u>아동의 권리</u>”란 「<u>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u>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u>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p> <p><u>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u></p> <p><u>나. 보호권: 각종 위협, 모든 형태</u></p>

의 학대와 방임 및 폭력, 차별
대우와 착취, 가족과의 인위적
인 분리 등의 유해한 것으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정서적·도
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
의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
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
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
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2장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 4. (생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제3조의2(조성원칙) -----

-----.

1. ----- 자신 또는 부모, 후견인의 사회적 신분, 연령, 성별, 종교,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

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생략)

<신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아동이 제안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구 아동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알릴 수 있다.

<삭제>

제10조의3(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 2.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 3.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
- 4.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본조 신설

2018.11.8.]

<신 설>

<신 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11조의2(시민의견수렴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자체 일반현황 및 제11조의 아동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초해서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아동권리옹호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의2(수당) 구청장은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제13조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

----- 필요한 -----
-----.

제16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17조(구성) ①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신 설>

<신 설>

④·⑤ (생략)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2.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④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아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수집단 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생 략)

제5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4. (생 략)

5. 아동 보호자 대표

6.·7.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

-----.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 보호자 및 아동대표자

6.·7. (현행과 같음)

8.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제30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4. 아동참여기구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신 설>

제31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 설>

제7장 아동권리 ombudsman

<신 설>

제32조(아동권리 ombudsman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기능)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태 발굴, 모니터

<신 설>

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 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34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 5. 아동보호자 및 아동대표자
- 6. 그 밖에 구청장이 옴부즈퍼슨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신 설>

제29조 (생 략)

- 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6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4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정비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삭제(제1조)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
 - 특수관계사업자 정의(제2조4호)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 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제6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4조)
-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제18조)
- 이해충돌방지 규정 조문에서 삭제·정리(제21조)

○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 로 한자 병행 표기(제14조의3제3호)
- “산하기관” 용어 정비(제14조의3제4호, 5호)
- “서면” 용어 설명(제17조제2항)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제27조제1항)

○ 이해충돌방지 규정 관련 서식 삭제

-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9호서식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담당관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실
- 전 화 : ☎ (032)560-6861,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정비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삭제(제1조)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
 - 특수관계사업자 정의(제2조4호)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 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제6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4조)
 -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제18조)
 - 이해충돌방지 규정 조문에서 삭제·정리(제21조)
-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제14조의3제3호)
 - “산하기관” 용어 정비(제14조의3제4호, 5호)
 - “서면”용어 설명(제17조제2항)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제27조제1항)
- 이해충돌방지 규정 관련 서식 삭제
 -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9호서식 삭제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특기할 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6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영 제13조의3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영 제13조의3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5의2, 제5조의6, 제6조,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9호서식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p> <p>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p>	<p>제1조(목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 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 2.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

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3. 직무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
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
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
우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본문에 따
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
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
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제5조의2(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

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
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
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삭 제>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

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삭 제>

<삭 제>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청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

<삭 제>

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

<삭 제>

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시 해당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선박· 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생략)

- 1. · 2. (생략)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삭 제>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
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
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
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
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
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
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
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
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
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
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 전가(轉嫁)-----

4. 영 제13조의3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단체에 공무원 -----

5. -----
----- 영 제13조의3제4호
각 목의 ----- 단
체-----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략)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구청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

관계 법령 발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 2016. 9. 27., 2018. 1. 16., 2021. 11. 3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 9. 27.>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삭제 <2022. 6. 2.>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 6. 2.>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 6. 2.>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 6. 2.>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 6. 2.>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22. 6. 2.>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022. 6. 2.>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삭제 <2022. 6. 2.>

부칙 <제32661호, 2022.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관·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4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서구청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피해 직원 등에 대한 정의(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예방 교육 및 홍보(제4조)
-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제5조)
-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6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임기, 위원회 제척기과회피, 해촉 및 운영(제7조 ~ 제12조)
-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제13조)

- 불이익 조치 금지 등(제14조)
- 허위신고(제15조)
- 비밀유지(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담당관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실
- 전 화 : ☎ (032)560-6861,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1. 제안이유

- 서구청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피해 직원 등에 대한 정의(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예방 교육 및 홍보(제4조)
-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제5조)
-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6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임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운영(제7조 ~ 제12조)
-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제13조)
- 불이익 조치 금지 등(제14조)
- 허위신고(제15조)
- 비밀유지(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부서협의: 가정교육과 협의

라. 기 타: 특기할 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 기관 및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6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괴롭힘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공무원 대표 등 중에서 5명 이내
2. 인사, 법무, 기간제·공무직, 성희롱·성폭력 분야 담당 공무원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② 피해직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괴롭힘 조사 전 또는 후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

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5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6조(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관·실·과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443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새오개로 일부 거리의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기간: 2022. 3. ~ 2022. 12.
- 나. 사업비: 4억2천 범위내
- 다. 위치: 석남동 새오개로 일원[위치도 참조]

연번	시점	종점
1	새오개로 37(석남동 199-135)	새오개로 15(석남동 183-69)
2	새오개로 38-1(석남동181-11)	새오개로 8-1(석남동 190)

- 라. 사업대상: 도로구간과 접하는 토지 및 건물(점포)
- 마. 예산지원: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 및 제작 설치비 지원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2. 8. 8. ~ 2022. 8. 25.

나.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홈페이지 및 구보,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다. 공람내용: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 새로개로 간판개선 사업 계획서, 정비시범구역지정관련 서류 일체
(디자인(안) 포함)는 도시재생과 방문열람 요망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 전자메일, 우편 등으로 기간내 제출

다. 제출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방법

1) 방 문: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185)

2) 우 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세민빌딩 4층) /우) 22726

3) 팩 스: 032-560-2749

4) 메 일: purifiedsoul@korea.kr

마.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및 의견제출서 1부

■ 사업구간 위치도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 호

2022년 『새오개로 간판 개선 사업』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 · 불법 간판이 다수 설치된 새오개로 일원(위치도 참조)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의 규격, 수량, 크기, 종류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①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새오개로 간판개선 사업]

- 사업기간: 2022. 3. ~ 2022. 12.
- 사업비: 4억2천 범위내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새오개로 일원[위치도 참조]

연번	시점	종점
1	새오개로 37(석남동 199-135)	새오개로 15(석남동 183-69)
2	새오개로 38-1(석남동181-11)	새오개로 8-1(석남동 190)

※ 사업대상: 도로구간과 접하는 토지 및 건물(점포)

- 예산지원: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 및 제작 설치비 지원

제4조(광고물 등의 디자인)

- ① 옥외광고물 등의 디자인은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크기를 정하고 건축물의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② 같은 건축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인접 광고물과 통일성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③ 획일화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업소별 특징 및 개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 1개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업구간 내 업소 중 디자인이 우수하고 이 고시의 표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있는 업소의 간판은 개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모든 광고물, 게시시설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재질은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④ 조명은 모두 비점멸 LED(KS인증업체 제품) 조명을 사용한다.

제6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건물의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2층 이상 층은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특히 건물의 1층은 벽면에 미관을 고려하여 판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가로 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이내를 권장하나 건물의 환경 및 외벽의 상태에 따라 업소 폭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세로 크기는 업소의 창문과 창문간 이내로 하며 최대 1.5m 이내로 한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① 돌출간판의 신규 설치와 연장 허가 표시·설치를 금한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지주 이용 간판의 신규 설치와 연장 허가 표시·설치를 금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① 옥상 간판의 신규 설치와 연장 허가 표시·설치를 금한다.

제10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건물 2층 이하에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창문 이용 광고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심의)

- ① 건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상, 이 고시의 표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표시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정비시범구역 내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임차인(광고주) 등이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허가·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사업구간 위치도



